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1. 장비기준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2대

나. 개별장비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수압계	연속식	2대
	유량계	연속식	2대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mm	1조
	건조기	항온항습	1대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조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침강실험장치	-	1대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μ m	1대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상수도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mm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mm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2. 기술진단의 실시 방법

- 가. 수도시설의 규모 또는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별 진단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 나.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